

경기도 도시공원의 지정·조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d Urban Park Policy in Gyeonggi Province through Analyzing Designation and Creation Rationale

Sung, Hyun-Chan

Senior Research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basic policy materials to build a basis for supplying and creating urban parks balanced across Gyeonggi provinc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all city parks in cities/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first, the number of parks is only 40% of the adequate number and, thus, accessibility of Gyeonggi province residents to parks in neighborhoods is significantly low. Second, a proportion of park types in children's park, neighborhood park, urban nature park is 67% : 24% : 2%, which is adequate in Gyeonggi province as a whole. Third, as for the area of parks per resident, the area of designated park is 17.7m²/person, which is over three times of legal requirement in urban planning area (6m²/person). However, created park area is only 5.6m²/person, which fails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 Fourth, when park area of each city was compared, the areas varied significantly across cities.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needs to secure funds aggressively and accelerate setting up and expanding facilities at designated parks located within the current urban area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important materials when developing supply & demand policies for urban parks in Gyeonggi province. The study implicates that independent park policies and management by each city/county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comprehensive park policy at a provincial level is significantly important.

Keywords : urban park, hierarchy, allocation, the number of parks

I. 서론

도시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도시공원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Chiesura, 2004). 도시공원은 옥외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장소이고(남정철 등, 1992), 도시 내 근린공원은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고 미흡한 시설로 인해 여가활용공간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김성진 등, 2003), 조성된 공원도 부족하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성현찬 등, 2003).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도 법에 따라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조성 책임을 해당 시·군에 넘기고 있어 도시의 예산규모가 적거나 인구 수가 적은 도시에서는 법에 따른 지정공원은 있으나 실제로 조성된 공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니 도시별로 공원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의 형평성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오병태(1996)는 도시공원은 도시공공시설의 하나로서 도시에 공급되는 시설

Corresponding author : Sung, Hyun Chan

Tel : 031-250-3231

E-mail : hcsung@gri.re.kr

은 균등하게 공급 배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성현찬(1998)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도시공원의 조성에 있어서는 질적 기준이나 배분 측면 보다는 인구 1인당 면적기준과 같은 양적 기준이 더 중요한 요소로서 적용되어 왔으며, 실제적인 시민의 효율적 이용이나 도시 내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채 조성되어, 도시 전체에 대한 수치로서는 충분한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도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하고 있다.

반영은 등(1988)은 경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적정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설의 유치거리와 각 지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근린공원의 적정입지선정모형(Maximal Covering Location Problem)을 근거로 적정한 근린공원의 입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오병태(1995)는 광주시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의 이용과 공급에 관련하여, 도시공원이 밀도의 개념이 없이 조성되어 실질적으로 1인당 면적변화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구공원의 성격을 띤 근린공원과 해당 지역의 입지가 중요한 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근린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하기 보다는 작은 규모로 분산 배치함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신동진 등(1995)은 도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공원설치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손상락 등(2002)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식을 조사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공원녹지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생활권 공원이 일상적 이용에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며, 공원녹지의 방문 시 자동차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생활권 공원녹지의 부족과 함께 일상적 이용을 위한 공원녹지의 불균등한 배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성현찬 등(1999)의 많은 연구들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적극적인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영빈 등(1995)은 서울시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공원의 이용실태를 분석하면서 공원녹지의 기능 및 성격, 입지여건에 따라 적합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양한 조경기법과 조경소재의 개발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별 공원 성격과 기능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김종규 등(2002)은 서울시의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의 시설과 기능에 따라 도시공원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시공원이 공원명만 분류되어 있

을 뿐, 도시공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시설이 혼재되어 설치되어 있어 도시공원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공원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도시공원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공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공원 내 시설을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도시단위의 공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적 연구이거나, 단위 공원별 연구로서,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지역 전체의 공원현황 파악과 적정 공원 배분, 수요·공급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광역적인 분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위계별 분석, 법적 규모 만족여부, 조성여부, 면적별 분석, 적정 배분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공원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적인 도시공원 공급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연구의 물리적 범위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전체가 대상이며, 특히 법정 도시공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로서는 200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통일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의 도시공원 개소수, 면적, 도시별 지정 및 조성현황, 규모가 큰 공원의 배분, 공원의 법적 기준 만족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공원 전체 자료를 2006년 12월 말로 분석하고, 31개 시·군 전체에 대하여 방문, 공식 공문을 통해 시·군 개별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도의 자료와 시·군의 자료의 상이성에 대해서는 다시 시·군을 방문, 유선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공원의 조성여부에 있어서, 도시자연공원 등 면적이 넓은 공원의 경우, 시·군의 예산부족에 따라 시설지구를 일부 매입하고 시설조성을 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조성’된 공원과 ‘조성’된 것으로 분석하였다(이 경우 이미 시·군에서는 도에 공원 ‘조성’으로 보고되어 있었다).

공원의 위계분석, 조성실태 파악, 대규모 공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지정내용, 공원조성 내역, 시설물 내용, 조성비용, 관리비용 등에 대해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해당 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일부 조성공원의 조성여부, 공간구성 내용, 시설물 설치 내용, 이용상황 등을 조사(2007년 4-6월, 3개월간)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도시공원의 위계별 개소수 분석

가. 도시공원의 적정 필요수준 검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에 의하면, 생활권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는 250m이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500m이하, 도보권근린공원은 1,000m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1km 규모의 지구단위가 있다면, 어린이공원 : 근린생활권근린공원 : 도보권근린공원 = 16 : 4 : 1의 비율로 배치하게 되며, 같은 방법으로 본다면 4종류의 근린공원 분포비가 16km²당 근린생활권 : 도보권 : 도시계획권 : 광역권 = 64 : 16 : 4 : 1로 산정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경기도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법적 공원배치 기준에 따른 적정수준의 공원 개소수를 검토해 본 결과, 2005년 현재 경기도의 주거지역 면적은 320.75 km²이므로, 먼저 적정 어린이공원 개소수는 최소 5,132개 소이나 2006년 현재 어린이공원 개소수는 2,059개소로서 적정 필요 공원 개소수의 40.0%에 불과하다. 근린공원의 경우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1,283개소, 도보권 근린공원이 320개소,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은 80개소, 광역권 근린공원은 20개소로, 전체 근린공원의 적정 필요 개소수는 1,703개소이나, 역시 2006년 현재 근린공원의 지정 개소수는 749개소로서 적정 필요 공원 개소수의 43.9%에 불과하여, 지정 공원 개소수 측면에서는 아직 경기도민의 생활권공원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도시공원의 개소수 변화

1991년부터 15년간의 경기도에서의 도시공원 지정 개소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5년 단위로 평균 3배씩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도시자연공원의 비율을 16 : 4 : 1로 본다면, 76% : 19% : 5% 수준이어야 하는 바, 2006년 현재 67% : 24% : 2% 수준으로 경기도 전체로는 공원 유형별 비율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다. 시·군별 공원 위계별 개소수 분석

2006년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별로 공원 위계별 지정 공원의 개소수를 분석해보았다. 대상공원은 2006년 새로운 공원체계에 따라 신설된 생활권공원의 소공원과

주제공원은 제외하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각 시·군의 경우, 도시공원의 위계설정(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권, 광역권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기서는 법상의 면적기준(1만m², 3만m², 10만m², 100만m²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1. 1991년에서 2006년까지의 경기도 도시공원 개소수 변화 (단위:개소)

| 년도 | 계 | 생활권공원 | | | 도시자연 공원구역 | 주제공원 | | | |
|-----------|-------|---------|-----------|----------|--------------|----------|----------|----------|----------|
| | | 소 공원 | 어린이 공원 | 근린 공원 | 도시자연 공원 | 역사 공원 | 수변 공원 | 표지 공원 | 체육 공원 |
| 1991 년 | 335 | - | 306 | 25 | 3 | - | - | 1 | 0 |
| | 100% | - | 91.3% | 7.5% | 0.9% | - | - | 0.3% | 0% |
| 1995 년 | 1,483 | - | 1,019 | 408 | 45 | - | - | 6 | 5 |
| | 100% | - | 68.7% | 27.5% | 3.0% | - | - | 0.4% | 0.3% |
| 2000 년 | 1,871 | - | 1,318 | 484 | 52 | - | - | 7 | 10 |
| | 100% | - | 70.4% | 25.9% | 2.8% | - | - | 0.4% | 0.5% |
| 2006 년 | 3,068 | 153 | 2,053 | 749 | 66 | 1 | 4 | 12 | 30 |
| | 100% | 4.9% | 66.9% | 24.4% | 2.1% | 0.03% | 0.13% | 0.39% | 0.97% |

첫째, 공원위계별 공원 개소수의 비율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이 가장 많아야 하나(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6 : 4 : 1), 도리어 어린이공원의 개소수가 적은 시·군이 김포시, 광주시, 양평군, 파천시, 파주시, 가평군 등 6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주거와 밀접한 소공원으로서의 어린이공원의 접근이 어려워짐으로서, 도시공원의 부족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근린공원 내에서도 공원의 위계별로 공원 개소수가 정해져야 하나(근린생활권 : 도보권 : 도시계획권 : 광역권 = 64 : 16 : 4 : 1), 근린공원 내에서의 위계별 개소수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면적만 중심으로 한 분석이므로 정확한 공원 위계분석(시·군에서 정확히 규정하지 않음)이 아니라는 문제점과 공원의 면적은 넓을수록 좋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렵다. 셋째,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이 없는 시·군도 화성시 등 8개 시·군이 있었으며, 도시자연공원을 3개 이상이나 지정한 시·군도 성남시 등 9개 시로 분석되었다. 넷째, 1개 이상의 도시가 이용권이 되는 광역권 근린공원의 경우, 성남시를 비롯 도내에 5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참조).

표 2. 경기도 시·군별 공원 위계별 개소 수

| 구분 |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 | | | 도시자연공원 |
|------|-------|------|-----|-----|-------|-----|--------|
| | | 계 | 생활권 | 도보권 | 도시계획권 | 광역권 | |
| 수원시 | 188 | 49 | 27 | 11 | 11 | 0 | 2 |
| 성남시 | 166 | 46 | 11 | 13 | 20 | 2 | 5 |
| 부천시 | 85 | 25 | 16 | 3 | 5 | 1 | 1 |
| 안양시 | 89 | 12 | 4 | 4 | 4 | 0 | 3 |
| 안산시 | 147 | 52 | 13 | 24 | 15 | 0 | 7 |
| 용인시 | 152 | 94 | 41 | 37 | 16 | 0 | 10 |
| 평택시 | 76 | 39 | 20 | 10 | 9 | 0 | 2 |
| 광명시 | 66 | 17 | 6 | 9 | 2 | 0 | 2 |
| 시흥시 | 121 | 24 | 17 | 3 | 4 | 0 | 1 |
| 군포시 | 82 | 14 | 6 | 4 | 4 | 0 | 1 |
| 화성시 | 85 | 21 | 6 | 9 | 6 | 0 | 0 |
| 이천시 | 24 | 6 | 0 | 1 | 5 | 0 | 3 |
| 김포시 | 44 | 47 | 24 | 15 | 8 | 0 | 0 |
| 광주시 | 8 | 10 | 1 | 2 | 7 | 0 | 0 |
| 안성시 | 19 | 17 | 12 | 2 | 3 | 0 | 2 |
| 하남시 | 102 | 9 | 6 | 0 | 3 | 0 | 0 |
| 의왕시 | 57 | 8 | 5 | 1 | 2 | 0 | 0 |
| 오산시 | 45 | 30 | 15 | 9 | 6 | 0 | 1 |
| 여주군 | 17 | 11 | 3 | 5 | 3 | 0 | 0 |
| 양평군 | 5 | 8 | 1 | 4 | 3 | 0 | 0 |
| 과천시 | 1 | 4 | 1 | 2 | 0 | 1 | 3 |
| 고양시 | 132 | 67 | 30 | 24 | 13 | 0 | 6 |
| 의정부시 | 74 | 15 | 11 | 2 | 1 | 1 | 1 |
| 남양주시 | 72 | 24 | 12 | 8 | 4 | 0 | 2 |
| 파주시 | 46 | 50 | 24 | 18 | 8 | 0 | 4 |
| 구리시 | 78 | 9 | 4 | 4 | 1 | 0 | 2 |
| 포천시 | 17 | 9 | 1 | 3 | 5 | 0 | 2 |
| 양주시 | 24 | 7 | 4 | 2 | 1 | 0 | 3 |
| 동두천시 | 25 | 9 | 5 | 2 | 2 | 0 | 1 |
| 가평군 | 3 | 9 | 3 | 5 | 1 | 0 | 2 |
| 연천군 | 9 | 7 | 2 | 3 | 2 | 0 | 0 |
| 계 | 2,059 | 749 | 331 | 239 | 174 | 5 | 66 |

2. 도시공원의 위계별 면적 분석

가. 도시공원의 면적변화

1991년에서 2006년까지, 경기도에 지정된 도시공원의 위계별 면적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있어서, 매년 면적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0배이상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1년에는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 면적의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5년부터 현재에는 근린공원이 38%~40%까지 차지하였고, 도

시자연공원은 53% 수준으로 낮아졌다. 2006년 현재에는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의 절반수준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도시의 외곽 산림에 위치하고 거의 조성되지 못하는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도민이 이용가능한 도시공원의 면적은 통계수치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1991년에서 2006년까지의 경기도 도시공원 면적변화

| 년도 | 계 (천㎡) | 일상권공원(천㎡) | | | 주말권공원(천㎡) | | | 특정 목적 공원 |
|-------|-----------|-----------|----------|--------|----------------|----------|---------|----------------|
| | | 어린이 공원 | 근린 공원 | 계 | 도시 자연 공원 | 체육 공원 | 계 | |
| 1991년 | 11,855 | 610 | 2,310 | 2,920 | 8,447 | 0 | 8,447 | 488 |
| | 100% | 5% | 19% | 24% | 71% | 0% | 71% | 4% |
| 1995년 | 143,337 | 2,497 | 55,515 | 58,012 | 81,915 | 781 | 82,696 | 2,629 |
| | 100% | 2% | 39% | 41% | 57% | 1% | 58% | 2% |
| 2000년 | 154,947 | 3,087 | 58,525 | 61,612 | 87,849 | 1,168 | 89,017 | 4,318 |
| | 100% | 2% | 38% | 40% | 57% | 1% | 58% | 3% |
| 2006년 | 190,086 | 4,719 | 76,147 | 80,866 | 100,745 | 2,017 | 102,762 | 6,458 |
| | 100% | 3% | 40% | 43% | 53% | 1% | 54% | 3% |

주 : 소공원, 수변, 역사공원은 제외되어 합계 수치는 약간 다름

나. 활동권역별 도시공원 면적 변화

법적 공원의 유형구분(생활권공원, 주재공원 등)이 아닌, 실제로 도시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별로 도시공원을 재분류하여 실제 활동범위와 면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일상생활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을 ‘일상권 공원’이라 하며,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일상을 떠나 가까운 자연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원을 ‘주말권 공원’이라 하며, 도시자연공원과 체육공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묘지공원은 특정 이용자를 위한 공원임을 감안하여 ‘특정 목적공원’이라 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면적변화를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이, 1991년에는 주말권공원의 면적이 71%를 점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1995년이 되어서는 일상권공원의 면적이 41%까지 증가하여, 생활권주변에 대한 도시공원의 공간이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이 되어서까지 일상권공원의 확보가 지속되었으며 이와 함께 특정 목적공원도 확보되었다. 생활주변 환경의 질적 향상 요구 확대와 도시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2006년에도 일상권 공

원과 주말권 공원 모두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공원의 면적 확보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설정되어 산림을 보전하면서 일부구역은 시설화하여 도시민의 주말 휴양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6년 현재 활동권역에 의한 경기도 도시공원의 1인당 면적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면적 중 일상권 공원은 지정면적이 0.79%를 차지하고, 1인당 공원면적은 7.45㎡/인으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1인당 공원면적규정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말권 공원의 지정면적은 1.00% 수준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9.47㎡/인으로서 역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되어 있다. 전체 공원 면적으로 보면, 전체 경기도 면적 중 1.87%가 도시공원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17.5㎡/인으로서, 지정면적만으로는 법상 기준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활동권역에 의한 경기도 도시공원의 1인당 면적

| 구분 | 도시공원 유형 | 면적(천㎡) | 인구(천인) | 면적(k㎡) | 공원율(%) | 1인당 공원 면적(㎡/인) |
|------------|---------------------|---------|--------|----------|--------|----------------|
| 일상권 공원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80,866 | 10,852 | 10,182.5 | 0.79 | 7.45 |
| 주말권 공원 | 도시자연 공원, 체육공원 | 102,762 | | | 1.00 | 9.47 |
| 특정목적 공원 | 묘지공원 | 6,458 | | | 0.06 | 0.60 |
| 계 | | 190,086 | | | 1.87 | 17.5 |

주 : 소공원, 수변, 역사공원은 제외되어 합계 수치는 약간 다름

다. 시·군별 공원면적 분석

1) 도시공원 면적 및 조성 현황

도시공원의 조성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도내 시·군의 조성공원 평균면적율은 행정구역 면적의 0.60%로서 1%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부의 조성공원 평균면적율은 0.83%, 군부 평균면적율은 0.02%로서, 군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의 조성이 거의 없어 공원면적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도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의 경우, 지정공원 면적은 17.7㎡/인으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도시계획구역 내 6㎡/인의 기준을 3배 수준 상회하고 있으나, 조성된 공원면적은 5.6㎡/인으로 법 상 기준을 아직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5.6㎡/인이라는 수치도 과천시, 동두천시가 도시자연공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이 2개의 도시를 제외한 평균 조성면적은 4.6㎡/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조성여부를 떠나서 전체 공원의 지정면적 자체가 법 상 기준인 6㎡/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도시가 시흥시, 양주시 2개 도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시부의 경우, 1인당 평균 지정공원 면적은 17.8㎡/인으로, 법 상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가 법 상의 기준보다 높은 공원면적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성된 공원면적의 경우는, 과천시, 동두천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이천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9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시의 경우, 평균 조성공원 면적이 2.90㎡/인으로, 대부분의 도시가 도시공원법 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조성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지정공원 면적 확보율(10% 초과)이 높은 과천시 등 6개 도시의 경우도 대부분 도시 내의 임야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 결과로 면적 통계수치만 높아지게 된 사례이다. 군부의 경우도, 1인당 평균 지정공원 면적은 11.8㎡/인으로, 법 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평균 조성공원 면적은 2.45㎡/인으로 매우 낮은 조성공원 면적을 나타내고 있었다(표 5 참조).

2) 일상권 공원 면적 및 조성 현황

경기도 전체로 보면, 행정구역 대비 일상권 공원 면적율은 조성공원 기준으로 0.4%, 1인당 공원면적은 3.6㎡/인으로 나타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기준인 시가화구역 내 1인당 3㎡/인을 겨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시민들이 항상 공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이 될 것이며, 외국의 도시에 비해 경기도의 각 도시가 공원에 있어서 열악한 도시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성공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일상권 공원면적이 법 상 시가화구역내 기준인 3㎡/인 이상을 만족하는 곳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하남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 9개 도시에 불과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조성여부를 떠나서 일상권 공원의 계획면적 자체가 법 상 기준인 3㎡/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도시가 안양시 등 4개 도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참조).

성 현 찬

표 5. 경기도 각 시·군별 공원면적 분석

| 구 분 | 면적 (km ²) | 인구 (천인) | 인구 밀도 (인/km ²) | 공원면적 (천 m ²) | | 공원면적율 (%) | | 1인당공원면적 (m ² /인) | |
|------|--------------------------|------------|----------------------------------|-----------------------------|--------|--------------|-------|--------------------------------|-------|
| | | | | 계획 | 조성 | 계획 | 조성 | 계획 | 조성 |
| 수원시 | 121.1 | 1,055 | 8,712 | 11,490 | 3,591 | 9.49 | 2.97 | 10.9 | 3.4 |
| 성남시 | 141.8 | 993 | 7,003 | 20,845 | 10,478 | 14.70 | 7.39 | 21.0 | 10.6 |
| 부천시 | 53.4 | 863 | 16,156 | 6,677 | 2,818 | 12.50 | 5.28 | 7.7 | 3.3 |
| 안양시 | 58.5 | 629 | 10,756 | 8,512 | 1,817 | 14.55 | 3.11 | 13.5 | 2.9 |
| 안산시 | 147.1 | 697 | 4,739 | 9,271 | 5,796 | 6.30 | 3.94 | 13.3 | 8.3 |
| 용인시 | 591.5 | 702 | 1,187 | 17,588 | 5,098 | 2.97 | 0.86 | 25.1 | 7.3 |
| 평택시 | 453.1 | 391 | 864 | 5,432 | 842 | 1.20 | 0.19 | 13.9 | 2.2 |
| 광명시 | 38.5 | 330 | 8,562 | 3,044 | 507 | 7.91 | 1.32 | 9.2 | 1.5 |
| 시흥시 | 134.4 | 398 | 2,961 | 1,744 | 1,188 | 1.30 | 0.88 | 4.4 | 3.0 |
| 군포시 | 36.4 | 280 | 7,714 | 2,264 | 546 | 6.22 | 1.50 | 8.1 | 2.0 |
| 화성시 | 688.2 | 311 | 451 | 2,193 | 623 | 0.32 | 0.09 | 7.1 | 2.0 |
| 이천시 | 461.2 | 194 | 421 | 5,442 | 1,678 | 1.18 | 0.36 | 28.1 | 8.6 |
| 김포시 | 276.6 | 215 | 777 | 2,747 | 866 | 0.99 | 0.31 | 12.8 | 4.0 |
| 광주시 | 431.5 | 221 | 511 | 2,264 | 91 | 0.52 | 0.02 | 10.2 | 0.4 |
| 안성시 | 553.5 | 160 | 289 | 2,600 | 109 | 0.47 | 0.02 | 16.3 | 0.7 |
| 하남시 | 93.1 | 134 | 1,441 | 1,363 | 1,007 | 1.46 | 1.08 | 10.2 | 7.5 |
| 의왕시 | 54.0 | 147 | 2,721 | 2,103 | 198 | 3.89 | 0.37 | 14.3 | 1.3 |
| 오산시 | 42.8 | 131 | 3,073 | 3,408 | 116 | 7.96 | 0.27 | 26.0 | 0.9 |
| 여주군 | 607.9 | 105 | 173 | 1,019 | 447 | 0.17 | 0.07 | 9.7 | 4.3 |
| 양평군 | 877.7 | 86 | 98 | 616 | 126 | 0.07 | 0.01 | 7.2 | 1.5 |
| 과천시 | 35.9 | 61 | 1,707 | 21,216 | 6,967 | 59.10 | 19.41 | 347.8 | 114.2 |
| 고양시 | 267.3 | 911 | 3,407 | 32,480 | 4,533 | 12.15 | 1.70 | 35.7 | 5.0 |
| 의정부시 | 81.6 | 405 | 4,963 | 3,019 | 2,548 | 3.70 | 3.12 | 7.5 | 6.3 |
| 남양주시 | 458.4 | 454 | 992 | 3,529 | 1,686 | 0.77 | 0.37 | 7.8 | 3.7 |
| 파주시 | 672.6 | 268 | 398 | 5,277 | 813 | 0.78 | 0.12 | 19.7 | 3.0 |
| 구리시 | 33.3 | 194 | 5,813 | 6,075 | 2,399 | 18.24 | 7.20 | 31.3 | 12.4 |
| 포천시 | 826.4 | 162 | 197 | 2,840 | 206 | 0.34 | 0.02 | 17.5 | 1.3 |
| 양주시 | 310.2 | 167 | 539 | 814 | 138 | 0.26 | 0.04 | 4.9 | 0.8 |
| 동두천시 | 95.7 | 85 | 884 | 4,215 | 3,506 | 4.40 | 3.66 | 49.6 | 41.2 |
| 가평군 | 843.4 | 55 | 66 | 932 | 49 | 0.11 | 0.01 | 16.9 | 0.9 |
| 연천군 | 659.6 | 48 | 69 | 905 | 98 | 0.14 | 0.01 | 18.9 | 2.0 |
| 계 | 10,182.5 | 10,852 | 1,066 | 191,921 | 60,883 | 1.88 | 0.60 | 17.7 | 5.6 |

주 : 동두천시의 경우 소요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조성 부분을 조성으로 도 자료에 보고됨으로서 조성 면적이 많아진 것임.

경기도 도시공원의 지정·조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표 6. 경기도 각 시·군별 일상권 공원 분석

| 구 분 | 면적 (km ²) | 인구 (천명) | 인구 밀도 (인/m ²) | 어린이공원 면적(천m ²) | | 근린공원면적 (천m ²) | | 일상권공원 면적율(%) | | 1인당일상 공원면적(m ²) | |
|------|--------------------------|------------|---------------------------------|-------------------------------|---------|------------------------------|----------|-----------------|------|--------------------------------|-------|
| | | | | 계획 | 조성 | 계획 | 조성 | 계획 | 조성 | 계획 | 조성 |
| 수원시 | 121.1 | 1,055 | 8,712 | 481.8 | 396.6 | 4,405.1 | 2,929.5 | 4.0 | 2.7 | 4.6 | 3.2 |
| 성남시 | 141.8 | 993 | 7,003 | 448.4 | 279.5 | 9,152.4 | 3,829.9 | 6.8 | 2.9 | 9.7 | 4.1 |
| 부천시 | 53.4 | 863 | 16,156 | 278.8 | 258.8 | 4,187.0 | 2,260.8 | 8.4 | 4.7 | 5.2 | 2.9 |
| 안양시 | 58.5 | 629 | 10,756 | 217.0 | 192.2 | 987.1 | 927.7 | 2.1 | 1.9 | 1.9 | 1.8 |
| 안산시 | 147.1 | 697 | 4,739 | 244.5 | 216.0 | 4,870.7 | 4,361.0 | 3.5 | 3.1 | 7.3 | 6.6 |
| 용인시 | 591.5 | 702 | 1,187 | 367.3 | 277.4 | 6,903.4 | 2,141.7 | 1.2 | 0.4 | 10.4 | 3.4 |
| 평택시 | 453.1 | 391 | 864 | 179.6 | 143.0 | 2,742.0 | 671.8 | 0.6 | 0.2 | 7.5 | 2.1 |
| 광명시 | 38.5 | 330 | 8,562 | 138.9 | 67.2 | 781.7 | 187.8 | 2.4 | 0.7 | 2.8 | 0.8 |
| 시흥시 | 134.4 | 398 | 2,961 | 259.9 | 154.0 | 1,113.5 | 921.2 | 1.0 | 0.8 | 3.5 | 2.7 |
| 군포시 | 36.4 | 280 | 7,714 | 166.3 | 154.4 | 1,483.0 | 391.7 | 4.5 | 1.5 | 5.9 | 2.0 |
| 화성시 | 688.2 | 311 | 451 | 159.7 | 102.1 | 1,864.5 | 352.3 | 0.3 | 0.1 | 6.5 | 1.5 |
| 이천시 | 461.2 | 194 | 421 | 45.7 | 32.7 | 1,311.9 | 0.0 | 0.3 | 0.0 | 7.0 | 0.2 |
| 김포시 | 276.6 | 215 | 777 | 102.2 | 47.7 | 2,634.8 | 818.7 | 1.0 | 0.3 | 12.7 | 4.0 |
| 광주시 | 431.5 | 221 | 511 | 16.2 | 1.5 | 2,020.7 | 89.8 | 0.5 | 0.0 | 9.2 | 0.4 |
| 안성시 | 553.5 | 160 | 289 | 49.3 | 33.3 | 810.6 | 75.7 | 0.2 | 0.0 | 5.4 | 0.7 |
| 하남시 | 93.1 | 134 | 1,441 | 209.9 | 52.6 | 1,121.0 | 954.7 | 1.4 | 1.1 | 9.9 | 7.5 |
| 의왕시 | 54.0 | 147 | 2,721 | 70.8 | 14.2 | 1,323.7 | 103.4 | 2.6 | 0.2 | 9.5 | 0.8 |
| 오산시 | 42.8 | 131 | 3,073 | 126.1 | 70.5 | 2,451.9 | 45.5 | 6.0 | 0.3 | 19.7 | 0.9 |
| 여주군 | 607.9 | 105 | 173 | 41.9 | 14.4 | 795.6 | 250.7 | 0.1 | 0.0 | 8.0 | 2.5 |
| 양평군 | 877.7 | 86 | 98 | 9.8 | 0.0 | 583.1 | 102.5 | 0.1 | 0.0 | 6.9 | 1.2 |
| 과천시 | 35.9 | 61 | 1,707 | 1.7 | 1.7 | 6,748.4 | 6,748.4 | 18.8 | 18.8 | 110.7 | 110.7 |
| 고양시 | 267.3 | 911 | 3,407 | 407.5 | 372.2 | 6,191.8 | 4,049.7 | 2.5 | 1.7 | 7.2 | 4.9 |
| 의정부시 | 81.6 | 405 | 4,963 | 155.6 | 128.3 | 2,493.7 | 2,419.4 | 3.2 | 3.1 | 6.5 | 6.3 |
| 남양주시 | 458.4 | 454 | 992 | 124.9 | 64.4 | 1,169.8 | 167.6 | 0.3 | 0.1 | 2.9 | 0.5 |
| 파주시 | 672.6 | 268 | 398 | 90.3 | 54.0 | 3,260.4 | 427.3 | 0.3 | 0.1 | 8.8 | 1.8 |
| 구리시 | 33.3 | 194 | 5,813 | 158.4 | 78.0 | 542.8 | 146.6 | 2.1 | 0.7 | 3.6 | 1.2 |
| 포천시 | 826.4 | 162 | 197 | 45.4 | 17.6 | 1,634.8 | 44.0 | 0.2 | 0.0 | 10.4 | 0.4 |
| 양주시 | 310.2 | 167 | 539 | 40.8 | 22.7 | 306.5 | 115.7 | 0.1 | 0.0 | 2.1 | 0.8 |
| 동두천시 | 95.7 | 85 | 884 | 51.4 | 36.5 | 870.4 | 176.5 | 1.0 | 0.2 | 10.8 | 2.5 |
| 가평군 | 843.4 | 55 | 66 | 4.7 | 0.0 | 503.1 | 3.3 | 1.0 | 0.0 | 9.2 | 0.1 |
| 연천군 | 659.6 | 48 | 69 | 24.4 | 7.6 | 880.6 | 90.2 | 0.1 | 0.0 | 18.9 | 2.0 |
| 계 | 10,182.5 | 10,852 | 1,066 | 4,719.2 | 3,291.1 | 76,146 | 35,805.1 | 0.8 | 0.4 | 7.4 | 3.6 |

주 : 일상권공원 면적율(조성)에서 0.0은 0.05 미만인 경우임

3. 도시별 공원 비교 분석

가. 공원 면적기준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조성된 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율, 1인당공원면적을 분석한 결과, 공원면적율의 경우, 과천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해 조성면적기준으로 19.4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남시 7.39%, 구리시가 7.2%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28개 시군은 6%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천, 안양, 의정부, 동두천시를 제외한 23개 시군은 3%미만의 극히 미미한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살펴보면, 과천시가 30㎡ 이상(11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두천시, 성남시, 구리시, 안산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의정부시,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여주군,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13개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상의 면적기준(시가화 구역내 3㎡/인)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도시별 불균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나. 일상권 공원면적 기준

일상권 공원을 기준으로 1인당 조성공원면적을 분석한 결과(표 8 참조), 경기도 도시 전체의 1인당 조성공원면적은 3.6㎡/인으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상 면적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시군별로 분포상태를 분석하면, 법 상에 규정된 면적 6㎡/인을 초과하는 시는 안산시(6.6㎡), 하남시(7.5㎡), 의정부시(6.3㎡), 과천시(110.7㎡) 4개시 뿐이며 수원시(3.2㎡), 성남시(4.1㎡), 용인시(3.4㎡), 김포시(4.0㎡), 고양시(4.9㎡)를 제외하면, 나머지 22개 시군 전부가 3㎡/인 미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 등 10개 시군은 1㎡/인 미만의 극히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천시의 경우, 전체 공원으로서는 경기도내에서 가장 높은 공원면적율과 1인당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일상권공원의 분석결과, 시설화된 어린이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의 경우 1인당 110.7㎡/인이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경기도의 각 도시는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통하여 기존 시가지내의 일상권 지정공원의 시설화 및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규모가 큰 공원의 개소수 및 면적 분석

가. 근린공원의 규모 분석

공원 내 다양한 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의 도시 숲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모가

큰 규모의 공원 분포여부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먼저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근린공원의 지정에 있어서, 10만㎡이상(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이상 수준)의 면적을 가진 대규모 공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결과(표 9 참조) 개소수 기준으로 평균 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정공원 4개 중 1개 정도가 10만㎡이상의 규모가 큰 공원으로서, 경기도 전체로서는 적정한 비율(4 : 1)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남시,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포천시 등 5개 시·군은 10만㎡이상의 규모가 큰 근린공원이 더 많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과천시, 구리시, 양주시, 가평군의 경우는 10만㎡이상의 근린공원이 하나씩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린공원의 조성여부를 보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 등 인구가 50만을 넘어 도시의 규모와 재정력이 큰 6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조성된 근린공원 대부분이 10만㎡이하의 소규모 근린공원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대부분 소규모 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규모가 큰 공원의 분석

다음으로는 법 상으로 10만㎡이상의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규모가 큰 공원(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개소와 면적별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경기도 전체로서는 31개 시·군 전부에 총 241개소의 10만㎡이상 공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10만-30만㎡사이 규모의 공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100만㎡이상의 대규모 공원도 16개 시·군에 33개소가 지정되어 있었다(표 8 참조). 그러나 이러한 규모가 큰 공원들의 대부분은 토지매입의 예산부족 등으로 장기간 동안 거의 조성되지 못하게 된다.

표 7. 경기도 각 시군별 1인당 조성 공원면적

| 1인당 공원면적 | 해당시군 | 비고 |
|----------|---------------------------------------|---------------------------------------|
| 0-3㎡ | 아래 17개 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 | |
| -6㎡ | 수원, 부천, 시흥, 김포,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시(8개시)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상 시가화구역 내 3㎡/인 이상 기준 만족 |
| -10㎡ | 안산, 용인, 이천, 하남, 의정부시(5개시) | 도시계획구역내 6㎡/인 이상 기준 만족 |
| -15㎡ | 성남, 구리시(2개시) | 〃 |
| -20㎡ | - | 〃 |
| -30㎡ | - | 〃 |
| 30㎡ 이상 | 동두천(41.2㎡/인), 과천시(114.2㎡/인)(2개시) | 〃 |

표 8. 경기도내 규모가 큰 공원의 면적규모별 분석 결과

| 구 분 | 도시자연 공원 (시·군수 (공원수))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시·군수 (공원수)) | 광역권 근린공원 (시·군수 (공원수)) | 계 (시·군수 (공원수)) |
|----------------|-------------------------------|----------------------------------|--------------------------------|----------------------|
| 법 상 면적기준 | 10만㎡ | 10만㎡ | 100만㎡ | |
| 10만㎡-30만㎡ | 8(15) | 29(122) | 0(0) | 29(137) |
| 30만㎡-50만㎡ | 5(7) | 19(32) | 0(0) | 20(39) |
| 50만㎡-100만 ㎡ | 10(12) | 12(20) | 0(0) | 17(32) |
| 100만㎡ 이상 | 16(28) | 0(0) | 4(5) | 16(33) |
| 계 | 23(62) | 30(174) | 4(5) | 31(241) |

주 : 도시자연공원의 총 수는 66개소이나, 4개소는 법적 기준 면적 10만㎡ 이하의 공원임

둘째,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체 23개 시·군 총 62개소의 공원 중, 10만-30만㎡의 공원이 8개 시·군에 걸쳐 15개소가 계획되어 있었고, 30만-50만㎡의 공원은 5개 시·군에 7개소, 50만-100만㎡의 공원은 10개 시·군 12개소, 100만㎡이상 광역권 공원의 규모에 이르는 공원도 16개 시·군에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의 경우는 대부분 산림에 지정되는 특성상, 면적이 큰 쪽에 개소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경우, 전체 30개 시·군 총 174개소의 공원 중, 10만-30만㎡의 공원이 29개 시·군에 걸쳐 122개소가 계획되어 있었고, 30만-50만㎡의 공원은 19개 시·군에 32개소, 50만-100만㎡의 공원은 12개 시·군 20개소, 100만㎡ 이상 광역권 공원의 규모에 이르는 공원은 없었다.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의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과는 반대로 면적이 큰 쪽에 개소수가 더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광역권 근린공원의 경우는 4개 시·군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4개소가 조성되고, 1개소는 미조성 상태이다.

다음으로, 이 결과를 각 시·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첫째, 10만㎡이상의 규모가 큰 공원이 가장 많은 도시는 성남시로서 26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원을 10개소 이상 지정하고 있는 도시로는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파주시 등 7개시로서, 주로 신도시이거나 신시가지가 있는 도시로 분석되었다. 둘째, 광역권 근린공원은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의정부시 4개시에 지정되어 있으며, 성남시에는 2개소나 지정되어 있었다. 셋째, 고양시의 경우는 100만㎡이상의 규모가 큰 공원이 가장 많은 도시(5

개소)로 분석되었다.

다. 규모가 큰 공원의 분포 분석

경기도 내에 위치한 50만㎡이상 규모가 큰 공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50만㎡이상 100만㎡ 이하 공원은 총 3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16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조성된 공원은 수원시의 팔달근린공원, 부천시의 도당근린공원, 안산시의 성호근린공원, 고양시의 정발산 근린공원 등이었다. 100만㎡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원도 총 33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중 조성된 것은 수원시의 지시대 도시자연공원, 부천시의 성곡 도시자연공원, 이천시의 설봉 도시자연공원 등 16개소이었다. 따라서, 50만㎡이상의 규모가 큰 공원은 경기도 내에 총 65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32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규모가 큰 공원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남서부지역과 서울시의 인접도시에만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화성시, 여주군, 시흥시 등의 경기도 남부지역과 김포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등의 북동부 지역 같이 경기도의 주요 산림축이 지나가는 8개 시·군에는 규모가 큰 공원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큰 공원이 분포한 지역이라도, 북동부지역의 파주시, 남부지역의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안성시, 오산시 등의 6개 도시는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북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는 50만㎡이상의 규모가 큰 조성공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등에 규모가 큰 공원의 분포가 많은 만큼 미 조성된 공원의 수도 많았으며, 규모가 큰 공원이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역시 서울 인접 도시들로서 고양시가 9개소, 성남시 8개소, 용인시가 6개소, 안산시가 5개소, 수원시와 부천시, 과천시가 각각 4개소로 지정되어 있었다 (표 9 참조).

5. 공원규모의 법적 규모기준 만족여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공원에 대하여 법 상의 면적기준 만족여부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의 태평공원(96,328㎡), 안산시의 별망성공원(71,882㎡), 용인시 영덕중앙공원(26,778㎡), 파주시의 마지공원(77,764㎡)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시공원법 상의 면적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도시자연공원은 산림 등 양호한 자연을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공원 위계를 단순히 규모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하향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공원분류에 따라 ‘도시

성현찬

표 9. 경기도내 계획된 규모가 큰 공원

| 구분 | 50만㎡-100만㎡ | | 100만㎡이상 | | 50만㎡ -100만㎡ | | 100만㎡ 이상 | |
|------|------------|-----|---------|-----|------------------------------------|---------------------|-----------------------------|--|
| | 조성 | 미조성 | 조성 | 미조성 | 조성 | 미조성 | 조성 | 미조성 |
| 수원시 | 3 | | 1 | | 영흥(자), 팔달(도),여기산(도) | | 지지대(자) | |
| 성남시 | 1 | 2 | 3 | 2 | 영장(도) | 삼평(도),여수(도) | 남한산성(자), 이매(자), 대원(광) | 성남(자),판교제4호(광) |
| 부천시 | 2 | | 2 | | 도당(도),심곡(도) | | 성곡(자),원미 (광) | |
| 안양시 | | | 1 | | | | 비산(자) | |
| 안산시 | 3 | 1 | | 1 | 노적봉(자),성호(도), 호수공원제2구역(도) | 구봉(자) | | 사동(자) |
| 용인시 | 1 | 2 | | 3 | 용인제11호(도) | 죽전(자), 용인제24호(도) | | 구성1(자),구성2(자), 유방(자) |
| 평택시 | | | 1 | | | | 부락산(자) | |
| 광명시 | | 1 | 1 | | | 구름산(자) | 도덕산(자) | |
| 시흥시 | | | | | | | | |
| 군포시 | | 2 | | | | 반월(자), 초막골(도) | | |
| 화성시 | | | | | | | | |
| 이천시 | | 1 | 1 | 1 | | 부악(자) | 설봉(자) | 해룡(자) |
| 김포시 | | | | | | | | |
| 광주시 | | 1 | | | | 쌍령(도) | | |
| 안성시 | | | | 1 | | | | 비봉(자) |
| 하남시 | 1 | | | | 미사(도) | | | |
| 의왕시 | | 1 | | | | 효행(도) | | |
| 오산시 | | 1 | | | | 독산성(자) | | |
| 여주군 | | | | | | | | |
| 양평군 | | | | | | | | |
| 과천시 | | | 1 | 3 | | | 서울대(광) | 관악산(자),우면산(자), 청계산(자) |
| 고양시 | 4 | | | 5 | 행주산성(자), 정발산(도),호수(도), 성라(도) | | | 망월(자),노고산(자), 북한산(자),봉산(자), 서오농(자) |
| 의정부시 | 1 | | 1 | | 직동(도) | | 추동(광) | |
| 남양주시 | | 1 | 1 | | | 제9호(자) | 홍유통(자) | |
| 파주시 | | 2 | | | | 금촌(자), 봉일천(자) | | |
| 구리시 | | | 1 | 1 | | | 동구릉(자) | 아차산(자) |
| 포천시 | | 1 | 1 | | | 신읍(도) | 청성(자) | |
| 양주시 | | | | | | | | |
| 동두천시 | | | 1 | | | | 소요(자) | |
| 가평군 | | | | | | | | |
| 연천군 | | | | | | | | |
| 계 | 16 | 16 | 16 | 17 | | | | |

주 : (도)-도시지역권근린공원, (자)-도시자연공원, (광)-광역권근린공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양호한 산림을 보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경우도, 부천시의 고강 선사유적공원(79,965m²), 오산시의 갈곶공원(38,755m²), 갈곶제1공원(21,876m²), 파주시의 교하4공원(55,120m²)과 파주3공원(22,000m²) 등은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공원법상의 면적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으로의 지정이 불가능한 공원이었다. 이들 규모 이하의 공원은 총 6개 시·군에 9개소의 공원으로 나타났으며, 광역권 근린공원은 법적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었다.

반대로, 법 상 근린공원의 최소 면적기준인 1만m²에도 미달하는, 법적 공원이 지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근린공원이 17개 시·군에 34개소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원 최소면적의 절반수준인 5천m²에도 못 미치는 어린이공원 수준의 면적을 가진 공원은 6개 시·군에 11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성시의 경우는 4개소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시계획에 의한 장기적인 공원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원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도시들의 경우, 주로 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된 소규모 공원을 기부채납 받은 후, 추후 도시계획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안인 것이다. 이 공원들은 앞으로 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어린이공원', 또는 '소공원'으로 변경 지정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광역적인 분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위계별 분석, 법적 규모 만족여부, 조성여부, 면적별 분석, 적정 배분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공원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적인 도시공원 공급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적정수준의 공원 개소수를 검토해 본 결과, 어린이공원은 적정 필요 공원 개소수의 40.0%, 근린공원의 경우는 적정 필요 공원 개소수의 43.9%에 불과하여, 지정 공원 개소수 측면에서는 아직 경기도민의 생활권공원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적극적인 공원의 지정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둘째,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유형별 비율은 67% : 24% : 2% 수준으로 경기도 전체로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리어 어린이공원의 개소수가 적은 시·군이 6개 시·군으로

나타나, 가장 주거와 밀접한 소공원으로서의 어린이공원의 접근이 어려워짐으로서, 도시공원의 부족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공원의 유형별 배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도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의 경우, 지정공원 면적은 17.7m²/인으로 법 상의 도시계획구역 내 6m²/인의 기준을 3배 수준 상회하고 있으나, 조성된 공원면적은 5.6m²/인으로 법 상 기준을 아직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6m²/인이라는 수치도 과천시, 동두천시가 도시자연공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이 2개의 도시를 제외한 평균 조성면적은 4.6m²/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별로 공원면적을 비교한 결과, 시민 1인당 공원면적에서 과천시가 30m²이상(114.2m²)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두천시, 성남시, 구리시, 안산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의정부시,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여주군,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13개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법 상의 면적기준(시가화 구역 내 3m²/인)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도시별 불균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의 각 도시는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통하여 기존 시가지내의 지정공원의 시설화 및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규모가 큰 공원의 분석결과, 경기도 전체로서는 31개 시·군 전부에 총 241개소의 10만m²이상 공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10만-30만m²사이 규모의 공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100만m²이상의 대규모 공원은 16개 시·군에 33개소가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가 큰 공원들의 대부분은 토지매입의 예산부족 등으로 장기간 동안 거의 조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남서부지역과 서울시의 인접도시에만 주로 분포되어 있어, 도 전체의 균형있는 공원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도시공원의 수요·공급 정책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시·군별 독립적인 공원정책과 관리도 중요하나, 광역지자체인 도에서의 종합적인 공원정책 수립과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경기도 통계연보. 1997, 2006
2. 경기도청 농정국, 산림녹지과 내부자료. 2006.12
3. 김성진, 윤충열. 2003.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 567.

4. 김영빈, 이호진. 1995. “지역 특성에 따른 근린공원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지하공간 개발의 측면에서-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5(2) : 277-282.
 5. 김제현, 신재익. 2003. “근린공원 시설물의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회발표논문집. 23(2) : 591-594.
 6. 김종규, 고원용, 이원식, 김홍규. 200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pp, 797-806.
 7. 반영운, 유한. 1988. 도시근린공원의 적정입지 선정 방법.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8(1) : 243-246.
 8. 성현찬. 1998. “경기도 도시공원의 시민접근성 비교와 향상방안”. 경기연구. 3 : 63.
 9. 성현찬, 신지영. 2005. 도시공원의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경기도 권역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3(2) : 83-91.
 10. 손상락, 윤병구. 2002. “도시민의 공원녹지의식에 의거한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4) : 59-81.
 11. 신동진, 진영효. 199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 79, 91.
 12. 안동만, 최형석, 김인호, 조형준. 1991.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접근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4) : 18.
 13. 오병태. 1995. “광주시 도시공원의 이용과 공급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4) : 1-21.
 14. 허미선, 진양교. 1996. “GIS를 활용한 서울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3) : 43.
 15. Chiesura A. 2004. The role of urban parks for the sustainable cit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8: 137.
-
- * 접수일 : 2007년 8월 6일
 ■ 3인 익명 심사필